
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[민원인 안내서]

2021. 12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

지침서 · 안내서 제·개정 점검표

명칭

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

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등록대상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이미 등록된 지침서 · 안내서 중 동일 · 유사한 내용의 지침서 · 안내서가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☞ 상기 질문에 ‘예’ 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 · 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 · 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사유 : _____)	
	<input type="checkbox"/> 법령(법·시행령·시행규칙) 또는 행정규칙(고시·훈령·예규)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 지시 · 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 규정을 단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☞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‘예’ 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 · 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. 지침서 · 안내서 제 · 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		
지침서 · 안내서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? (공무원용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(☞ 지침서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<input type="checkbox"/>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? (민원인용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(☞ 안내서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기타 확인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 · 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☞ 상기 질문에 ‘예’ 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 · 안내서 제 · 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	

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.

2021년 12월 30일

담당자
 확인(부서장)

신 용 관
 최 미 라

이 안내서는 화장품 표시·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표현의 예시를 제시하고 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 주요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.

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(‘~하여야 한다’ 등)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본 안내서는 2021년 12월 현재의 과학적·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“민원인 안내서”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·훈령·예규 등(이하 “행정규칙”이라 한다)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(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)

※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전화번호: 043-719-3412, 3409 팩스번호: 043-719-3400

제·개정 이력

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

연번	제·개정번호	승인일자	주요내용
1	B2-2011-4-001	2011. 06. 22.	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
2	B2-2013-4-004	2013. 11. 29.	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
3	B2-2014-4-004	2014. 09. 30.	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
4	B2-2015-4-001	2015. 04. 30.	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
5	안내서-0086-02	2020. 12. 24.	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-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표현, 외국어 광고 표현 제한,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 라인 내용 반영 등
6	안내서-0086-03	2021. 12. 30.	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-ISO 천연·유기농 지수 표시·광고 방법 마련

I 목 적

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법 제13조,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, 제23조, 별표 5와 관련하여, 화장품의 용기·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금지표현의 예시와 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자료 요청에 관한 주요 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·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제조업자·화장품책임판매업자·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·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II 적용 범위 및 기준

1. 적용 범위

- ①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제조업자·화장품책임판매업자·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(이하 '책임판매업자등'이라 한다)가 화장품의 용기·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(이하 '표시'라 한다)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.
- ②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.

2. 표시·광고 표현범위

책임판매업자등이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금지표현 등 세부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.

3. 표시·광고 실증의 주요 대상

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·광고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으로 한다. 아울러

실증대상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들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, 별표 2에 국한되지 않는다.

III 주의 사항

1.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은 제조업자는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, 삭제, 오버레이블링(over-labelling)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통과정에서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2.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표시·광고의 금지표현과 실증자료 요청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예시규정이며,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.
3. 책임판매업자등은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시험(in vivo) 또는 생체 외 시험(in vitro 등)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4. 사용금지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일/유사한 의미의 영어 등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.
5.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가이드라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지한 표시·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.
6. 이 가이드라인 외의 광고 표현의 경우에도 화장품법령,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되, 단어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.

7. 이 가이드라인 [별표 2] 3.에 따라 ISO 천연·유기농 지수를 표시·광고할 때에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·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.

① 제품의 전면부에 기재·표시하는 경우

“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(유기농화장품) 아님”을 함께 표시

* 전면 ISO 지수 표시와 함께 기재 권장(미기재 시 다른 면에 ②와 같이 기재 필요)

② 제품의 전면부 외에 기재·표시하는 경우

“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결과로 식약처 기준에 따른 ‘천연화장품(유기농화장품)’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” 표시

* 눈에 띄는 곳에 강조하는 등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재 필요

③ 제품이 아닌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

“천연지수 00%(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임). 다만, 이 지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화장품(유기농화장품)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(유기농화장품)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” 표시 등

*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 또는 예시와 같이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표현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며, 면적을 활용해 구체적 안내 필요

[별표 1]

화장품 표시·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

□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

구분	금지 표현	비고
질병을 진단·치료·경감·치치 또는 예방, 의학적 효능·효과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아토피 · 모낭충 · 심신피로 회복 · 건선 · 노인소양증 · 살균·소독 · 항염·진통 · 해독 · 이노 · 항암 · 항진균·항바이러스 · 근육 이완 · 통증 경감 · 면역 강화, 항알레르기 · 찰과상, 화상 치료·회복 · 관절,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, 효과 표방 · 기저귀 발진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여드름 	단, 기능성화장품의 심사(보고)된 ‘효능효과’ 표현 또는 [별표2] 1.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미, 주근깨(과색소침착증) 	단, [별표2] 1.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

구분	금지표현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향균 	<p>단, [별표2] 1.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하되, 이 경우에도 액체비누에 대해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 함유로 인해 향균 효과가 ‘더 뛰어나다’, ‘더 좋다’ 등의 비교 표시·광고는 금지</p>
피부 관련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신선, 튼살 	<p>단, 기능성화장품의 심사(보고)된 ‘효능효과’ 표현은 제외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(디톡스, detox) ·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려움을 완화한다 	<p>단, 보습을 통해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제외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○○○의 흔적을 없애준다. <예시> 여드름, 흉터의 흔적을 제거 	<p>단, (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) ‘가려준다’는 표현은 제외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홍조, 홍반을 개선, 제거한다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뽀루지를 개선한다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피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. 	<p>일부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. 단, [별표2] 1.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</p>

구분	금지표현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피부노화 · 셀룰라이트 · 붓기·다크서클 · 피부구성 물질(예: 효소, 콜라겐 등)을 증가, 감소 또는 활성화 시킨다. 	<p>단, [별표2] 1.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</p>
모발 관련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모·육모·양모 · 탈모방지, 탈모치료 ·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. ·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. · 속눈썹, 눈썹이 자란다. 	<p>단, 기능성화장품의 심사(보고)된 ‘효능효과’ 표현은 제외</p>
생리활성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혈액순환 · 피부재생, 세포 재생 ·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· 유익균의 균형보호 · 질내 산도 유지, 질염 예방 · 땀 발생을 억제한다 ·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. · 세포 활력(증가), 세포 또는 유전자(DNA) 활성화 	
신체개선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다이어트, 체중감량 · 피하지방 분해 · 체형변화 · 몸매개선,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. ·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. ·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. 	

구분	금지표현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얼굴 윤곽개선, V라인 	단, (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) '연출한다'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
원료 관련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(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 제공을 포함) 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메디슨(medicine), 드럭(drug), 코스메슈티컬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	

□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, 제3호 관련

구분	금지표현	비고
기능성 관련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능성 화장품 심사(보고)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, 화이트닝(whitening), 주름(링클, wrinkle) 개선, 자외선(UV)차단 등 기능성 관련 표현 · 기능성화장품 심사(보고)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·광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안전성·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·광고 	
원료 관련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(보고)하지 아니한 제품에 '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OO 함유' 등의 표현 · 기능성 효능·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· 원료 관련 설명시 기능성 오인 	

구분	금지표현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려 표현 사용(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) · 원료 관련 설명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·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	
천연·유기농 화장품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천연화장품,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‘천연(Natural)화장품’, ‘유기농(organic)화장품’ 관련 표현 	<p>제품에 천연, 유기농 표현을 사용하려면 「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)에 적합 필요(이 경우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구비 의무)</p> <p>단, [별표2] 3.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</p>

□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관련

구분	금지표현	비고
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, 공인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·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·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·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·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	
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(무첨가, free 포함) <예시> 無(무) 스테로이드, 無(무) 벤조피렌 등 · 부작용이 전혀 없다. · 먹을 수 있다. · 일시적 악화(명현현상)가 있을 수 있다. 	

구분	금지표현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불림생성 보톡스 레이저,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체내 노폐물 제거 	단, 피부·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러(filler) 	단, (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) '채워준다', '연출한다'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
줄기세포 관련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정인의 '인체 세포·조직 배양액' 기원 표현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(다만, 식물 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) <p><예시> 줄기세포 화장품, stem cell, ○억 세포 등</p>	·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'인체 세포·조직 배양액' 표현 가능
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성크림, 성 윤희작용 - 쾌감을 증대시킨다. - 질 보습, 질 수축 작용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-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	
그 밖의 기타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, 인증을 받은 제품임 	단,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(보고) 관련 표현, 천연·유기농화장품 인증 표현 제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료 관련 설명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·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	

[별표 2]

화장품 표시·광고 주요 실증대상

구 분	실증 대상	비 고
1.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) 별표 등에 따른 표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· 항균(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) · 일시적 쉬블라이트 감소 · 붓기 완화 · 다크서클 완화 · 피부 혈행 개선 ·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· 피부 피지분비 조절 · 미세먼지 차단, 미세먼지 흡착 방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체 적용시험 자료로 입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체 적용시험 자료,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피부노화 완화, 안티에이징, 피부노화 징후 감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체 적용시험 자료,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. 다만,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등 기능성 효능효과를 통한 피부노화 완화 표현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(보고) 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콜라겐 증가, 감소 또는 활성화 · 효소 증가, 감소 또는 활성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름 완화 또는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

구 분	실증 대상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미, 주근깨 완화에 도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(보고) 자료로 입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 받은 자료에 근거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
2. 효능·효과·품질에 관한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화장품의 효능·효과에 관한 내용 <예시> 수분감 30% 개선효과 피부결 20% 개선 2주 경과 후 피부톤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·검사와 관련된 표현 <예시> 피부과 테스트 완료 00시험검사기관의 00 효과 입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‘무(無) 00’ 표현¹⁾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 - 단, 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등 활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타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·광고 <예시> “00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

구 분	실증 대상	비 고
3. ISO 천연·유기농 지수 표시·광고에 관한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ISO 천연·유기농 지수²⁾ 표시·광고 <예시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연지수 00% (ISO 16128 계산적용) - 천연유래지수 00% (ISO 16128 계산적용) - 유기농지수 00% (ISO 16128 계산적용) - 유기농유래지수 00% (ISO 16128 계산적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 완제품 관련 실증 자료로 입증 - 이 경우 ISO 16128(가이드 라인)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과 소비자 오인을 방지 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 필요(주의 사항 참고)

1) 금지표현(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)을 제외한 경우에 한함

2) ISO 16128: 화장품의 천연·유기농 계산값을 얻기 위한 방법(가이드라인)

* 본 가이드라인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제정·개정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

발 행 일 2021년 12월

발 행 인 김상봉

편집위원장 최미라

편 집 위 원 이만덕 송호선 김종환 박미영 방준호 이선미 신용관 서동혁
김민수 최희수 임소라 정다영 김은영

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

도움주신분 화장품 표시·광고 개선 민관협의체 및
천연·유기농화장품 표시·광고 민관협의체 위원 일동
